

# 규약 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  
 (변경후: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유럽 주식 → 외국주식 집합투자증권)에 따른 펀드 유형(주식형 → 주식-재간접형), 펀드명칭 및 투자목적 변경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보수 인하
- 운용업무위탁계약 해지 반영
- 환매 시 기준가격 적용일 연장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2018 년 9 월 13 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 <u>주식-재간접형</u> ]
제2조(용어의 정의)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lt;생략&gt;</p> <p>2.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이 신탁계약에서는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를 말한다.</p>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lt;현행과동일&gt;</p> <p>2.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이 신탁계약에서는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u>주식-재간접형</u>]"를 말한다.</p>
제3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p>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주식]"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p> <p>1. 투자신탁</p> <p>2. 증권(주식형)</p> <p>3. ~6.&lt;생략&gt;</p> <p>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u>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엠앤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M&amp;G</u></p>	<p>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투자신탁[<u>주식-재간접형</u>]"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p> <p>1. 투자신탁</p> <p>2. <u>증권(주식재간접형)</u></p> <p>3. ~6.&lt;현행과동일&gt;</p> <p>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이스트스프링 유러피언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u>주식-재간접형</u>] &lt;생략&gt; (이하 "주식재간접형증권모투자신탁"이라 한다)</p>

<p>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이하 "주식증권모투자신탁"이라 한다)</p> <p>④ &lt;생략&gt;</p>	<p>④ &lt;현행과동일&gt;</p>
<p>제16조(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유럽지역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은 국제금융시장과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p>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유럽지역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익자는 외국통화로 발행되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은 국제금융시장과 투자대상국가의 주가, 금리, 환율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제3조제3항제1호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p> <p>2. ~4. &lt;생략&gt;</p>	<p>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p> <p>1. 제3조제3항제1호 주식재간접형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p> <p>2. ~4. &lt;현행과동일&gt;</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 ~④ &lt;생략&gt;</p>	<p>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b>제4영업일</b>(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b>제5영업일</b>)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 ~④ &lt;현행과동일&gt;</p>
<p>제39조(보수)</p>	
<p>① ~② &lt;생략&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p>	<p>① ~② &lt;현행과동일&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p>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2. 클래스 A-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5.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3. 클래스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5.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4. 클래스 C2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4.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5. 클래스 C3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3.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6. 클래스 C4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2.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7. 클래스 C5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8. 클래스 C-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클래스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2. 클래스 A-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5.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3. 클래스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5.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4. 클래스 C2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4.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5. 클래스 C3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3.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6. 클래스 C4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2.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7. 클래스 C5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

8. 클래스 C-E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
-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11.0

<p>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9. 클래스 C-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3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0. 클래스 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2.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1.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8.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2. 클래스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3. 클래스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5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4.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7.7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5. 클래스 S-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8.4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2.3  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7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다. 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9. 클래스 C-F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3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0. 클래스 C-I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2.0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1.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8.0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2. 클래스 C-W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3. 클래스 S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3.5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4.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7.7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15. 클래스 S-P 수익증권  가. <u>집합투자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4.2</u>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2.3  다. <u>신탁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35</u>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125</p>
<p>제39-1조(업무위탁에 대한 보수 지급)</p>	

<p>집합투자업자는 해외위탁운용회사에 위탁한 모투자신탁 업무에 대한 보수를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한다.</p>	<p>&lt;삭제&gt;</p>
<p>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p>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li> <li>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li> <li>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li> <li>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li> <li>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li> <li>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li> <li>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li> <li>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li> <li>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li> <li>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li> </ol> </li> </ol>	<p>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li> <li><b>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변경</b></li> <li>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li> <li>4.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li> <li>5.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li> <li>6.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7.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li> <li>8.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9.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li> <li>10.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li> <li>1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li> </ol> </li> </ol>

<p>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p> <p>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p> <p>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② ~⑨&lt;생략&gt;</p>	<p>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p> <p>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p> <p>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p> <p>12.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② ~⑨&lt;현행과동일&gt;</p>
---	---